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96호

2021.7.19.(월)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4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3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청년청(담당관)”을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으로, “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을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을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전략”을 “민생”으로, “미래전략특보”를 각각 “민생특보”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5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시민봉사”를 “국제교류, 시민봉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봉사담당관”을 각각 “국제교류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11.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12.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⑧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2.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8.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11.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2.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13.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①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지원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인가구 특별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특별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여성, 여성권익”을 “양성평등, 권익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을 각각 “양성평등정책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노동민생정책관”을 각각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소상공인지원”을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로, “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경제과장”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 총괄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간편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미래청년기획단) ①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정책 업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4. 청년허브 등 청년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5. 서울청년의회 운영 및 지원
6. 국내외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미래기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시행에 관한 사항
8.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 공간 조성·운영
9.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각각 “재정담당관·공기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한다.

8.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투자창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도시농업과·지역상생경제과·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창업정책과·일자리정책과·제조산업혁신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도시농업과·전략산업기반과·바이오AI산업과·금융투자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신성장산업기획관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은 “경제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금융투자과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제조산업혁신과장·도시농업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바이오AI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경제정책, 창업정책, 일자리정책, 제조산업, 캠퍼스타운활성화, 도시농업 등에 관하여, 신성장산업기획관은 마곡단지·G밸리 등 산업기반 활성화, 바이오·AI산업, 금융·투자, 미디어콘텐츠산업 등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13.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5.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감독

제11조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창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
9.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
10.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1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조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ICT기반 제조산업 공정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3. 스마트엔지니어링 등 도심제조업 혁신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5.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8항(중전의 제7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캠퍼스타운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제11조제9항(중전의 제8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1.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22.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점성장추진단장”을 “전략산업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부분(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9.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마곡 국제회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17.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0.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바이오AI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O육성에 관한 사항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AI양재 허브 육성에 관한 사항
9. 양재R&D 캠퍼스 조성에 관한 사항
10. AI 지원센터 등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⑫ 금융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6.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7.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8.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9.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10.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11.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12.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13.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14.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
15. 인베스트서울센터 설치·운영

⑬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5.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6.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7.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8.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9.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물류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시물류과장”을 “택시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류행정”을 “택시정책, 물류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물류과장”을 “택시정책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10호 및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⑨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분석
2.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3.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한 사항
5.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버스차고지, 공영주차장, 지하철역사, 대규모정비사업 등 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8. 스마트 물류 및 모빌리티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
9. 무인택배보관함, 노상 조업공간 등에 관한 사항
10. 지하철 활용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동물류 및 무인배송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2. 생활물류서비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생학습포털 운영 및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제1항 중 “건강증진과”를 “코로나19대응지원과·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1.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민협력국) ① 시민협력국에 시민참여과·시민숙의예산과·지역공동체과·사회협력과·갈등관리협치과를 둔다.

② 시민협력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시민참여과장·시민숙의예산과장·사회협력과장·갈등관리협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역공동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

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의 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민주주의 종합계획 수립
3.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 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4.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5. 민주주의서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시민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⑤ 시민숙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⑥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3.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5.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6.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
7.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동단위 주민주도 계획 수립 및 지원
9.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운영 지원

⑦ 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정책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사회혁신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3. 사회혁신 등 시정사업 민관공동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
4.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앵커조직 육성 및 협업
5.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6.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창의상 운영
8. 전환도시 정책 수립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
9.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갈등관리협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수립
2.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3.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4.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7.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NP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9. NPO지원센터 지도감독
10.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1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13.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4.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15.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2(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주택정책실에 주택정책과·주택정책지원센터·전략사업과·주택공급과·건축기획과·공공주택과·공동주택지원과·주거정비과·재정비축진사업과·지역건축안전센터·도시공간기획과를 둔다.

② 주택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재정비축진사업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3.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괄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공공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다가구·원룸 매입 공공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6. 청년 및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5. 특별공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8.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제외)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제외) 통합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5. 저층주거지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
 7.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관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지원주택 공급 업무에 관한 사항
 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전·후 매입)
 6.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8.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사장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6.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7. 서울건축문화제(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⑧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9.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0.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1.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 내 용지·택지 매각·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16.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 ⑨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4.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⑩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⑪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⑫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사항
 6.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8. 기존 건축물의 지진안전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⑬ 도시공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9.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전략계획과”를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전략계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을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2호 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2호로 한다.

④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회의참석, 안건 심사내용 설명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주택·건축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 도시계획 연혁관리 및 도시계획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입법동향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도시·건축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정책과·도시활성화과·주거재생과·주거환경과·도심권사업과·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한옥정책과·광화문광장주

진단을 둔다.

②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심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동남권사업과장·서부권사업과장·한옥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 균형발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새뜰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5. 골목길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6.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8. 한강을 포함한 도시공간 재생에 관한 사항
19.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등포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8.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구통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13.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⑤ 주거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주거재생 지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재생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 지역 내 에너지재생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8.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9. 희망지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마을공동체(근린재생일반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창신승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주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저층주거지 집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빈집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도심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역사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심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심기본계획상 옛길 관련 사항
6.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 정동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역사도심 내 서울옥상 조성에 관한 사항
1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가든파이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4.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5.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서계동 청파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7. 서울역 일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18.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9.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실행에 관한 사항
- ⑧ 동남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⑨ 동북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북권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창동·상계 일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창동역 일대 중심지 특화개발에 관한 사항
 7.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마장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동북권 신규 지역활성화 거점 발굴·조성에 관한 사항
- ⑩ 서부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남·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서남·서북권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색·DMC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서북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관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수색1 존치관리구역 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관련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1.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마곡지구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
14.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서울식물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외)
15. 마곡지구 교통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17.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8.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0.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⑪ 한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환경개선 사업
13.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옥 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옥 등 건축자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옥 등 건축자산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⑫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광화문광장 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화문광장 도로·교통·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6.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광화문광장의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8. 광화문광장 홍보에 관한 사항

9.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정부협약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을 삭제한다.

제90조제2항 중 “간호2과 및 원무과”를 “간호2과·원무과 및 의료지원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호과·약제과”를 “간호1과·간호2과·약제과”로, “간호과장”을 “간호1과장·간호2과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북병원 진료부 산하에 의료지원과를 두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부 내 행정업무
2. 공공사회사업 업무
3. 의료장비 등의 관리 및 구매
4. 대내·외 진료부와 관련된 협력업무 등

제141조제2항제6호 중 “적극행정면책심의”를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제5장제3절(제143조 및 제144조)을 삭제하고 같은 장 제4절(제145조 및 제146조)을 제3절로 하며, 제145조 및 제146조를 각각 제143조 및 제14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개정사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시민협력국,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부부시장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인권담당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재생실장·도시계획국장·물순환안전국장”을 “도시계획국장·균형발전
본부장·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도시교
통실장, 행정국장,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서대문구 부구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감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
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문화본
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국장, 재무국장, 평생교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시
민협력국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
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⑥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협치담당관”을 각
각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5. 위원회 운영란 중 “서울협치담당관”을 “갈등관리협치과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제38대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본부·국 및 보좌
기관 재편,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좌기관 규정 정비

- (1) 1인가구 지원정책 총괄 및 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제3조제1항)
 - (2) 공정·상생을 바탕으로 민생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재편(제3조제1항, 제7조의2)
 -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을 각각 '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재편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을 주택정책실 산하 '도시공간기획과'로 재편(제3조제1항, 제18조, 제9조의4, 제20조의2)
 - (4)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미래전략특보'를 '민생특보'로 명칭 변경(제3조제2항)
- 나. 조직개편 관련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재편(제5조)
 -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 보호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및 여성가족정책실장 개방형 직위 해제 (제7조)
 - (3) 디지털기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제7조의2)
 - (4) 균형발전 업무 이관에 따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제10조)
 - (5)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창업정책과', '금융투자과' 신설 등 (제11조)
 - (6)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 '물류정책과'로 재편(제13조)
 - (7)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국 내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제17조의2)
 - (8)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 대응지원과'로 개편(제17조의 4)
 - (9) 시민 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재편하여 '시민협력국' 신설(제18조)
 - (10) 주택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 핵심 주택사업 중점추진 및 주택정책 개발·연구 지원 등을 위한 '전략사업과', '주택정책지원센터' 신설 등(제 20조의2)
 - (11)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개편(제21조)
 - (12)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재편하여 '균형발전본부' 신설 및 본부 내 '균형발전정책과', '도심권사업과' 등 신설(제22조)
- 다. 기타 현안 업무 반영 등 기구 및 업무 분장 정비
- (1) 서북병원에 '의료지원과'를, 은평병원에 '간호2과'를 각각 신설(제90조)
 - (2) 감사위원회 부서 간 '일상감사' 업무 이관(제141조)
 - (당초) 감사담당관 → (변경) 공공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규칙 제44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635	4,719	356	1,160	5,196	204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26	4,662	347	396	5,019	202
-------	--------	-------	-----	-----	-------	-----

같은 표 2·3급 소계란, 이사관또는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급 소계	24	19		1	3	1
이사관또는 부이사관	23	18		1	3	1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18	9		1	8	
부이사관	18	9		1	8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 기술서기관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53	155	17	8	66	7
서기관	101	76	7	7	8	3
기술서기관	64	25			39	
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73	54			15	4

같은 표 4·5급 소계란,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기술서기관또는시설사무관란을 삭제한다.

4·5급 소계	10	10				
기술서기관 또는시설사무관	〈 삭 제 〉					
서기관·기술서기관또 는행정사무관·시설 사무관	6	6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보건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
란, 행정·보건또는간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433	963	47	57	327	39
행정	660	484	43	24	75	34
간호	16	10			6	
의료기술	6	4		1	1	
보건	10	10				
시설	193	122			70	1
방송통신	20	17		1	2	
행정·공업 또는시설	83	74		1	8	

행정·보건 또는간호	3	3				
------------	---	---	--	--	--	--

같은 표의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전산또는방송통신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490	1,884	110	105	1,291	100
행정	1,318	875	83	39	250	71
세무	50	47	2			1
사회복지	24	21			3	

전산	91	65	4	3	16	3
----	----	----	---	---	----	---

공업	346	112	6	4	222	2
----	-----	-----	---	---	-----	---

녹지	66	33			33	
----	----	----	--	--	----	--

보건	22	22				
----	----	----	--	--	--	--

환경	45	26		13	6	
시설	568	316	2	2	230	18

방송통신	54	33	2	4	15	
------	----	----	---	---	----	--

행정또는시설	42	40			2	
행정또는방송통신	2	1				1

행정·공업 또는시설	85	78			6	1
행정·공업·시설·전산	9	8			1	

전산또는방송통신	2	1	1			
전기운영	52			1	51	
기계운영	81				81	

같은 표의 7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시설란, 위생란, 행정 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육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34	1,387	115	145	1,735	52
행정	1,290	723	84	59	385	39
사회복지	37	22	1		13	1
전산	128	76	5	9	37	1
공업	417	32	5	12	366	2
녹지	81	11		2	68	
간호	135	9		3	123	
시설	525	224	2	5	286	8
위생	12	3		2	7	
행정또는시설	37	34			2	1
행정·공업또는시설	43	43				

전기운영	53	3			50	
기계운영	78	5	1		72	
사육운영	4				4	
사무운영	78	6	2	1	69	

같은 표의 8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녹지란, 시설관리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농업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332	189	50	71	1,019	3
행정	168	31	16	16	103	2
공업	111	7	1	5	98	
농업	〈 삭 제 〉					
녹지	19				19	
시설관리	47	2			45	
전기운영	52	1	1		50	
기계운영	123	2	2	1	118	
농림운영	10			2	8	
사무운영	161	49	13	18	80	1

같은 표의 9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농업란, 운전란, 시설관리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02	8	3	4	487	
행정	28	1	1	1	25	
공업	67	3			64	
농업	1				1	
운전	9				9	
시설관리	250	1		1	248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같은 표의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물관리요원란을 삭제하며, 한강도하관리업무담당란 다음에 동물박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18	27	4	4	83	
나군 소계	57	23	4	4	26	
동물관리요원	〈 삭 제 〉					
동물박제	1				1	
동물사육	7				7	

같은 표 전문경력관 다군 소계란, 고압전기안전관리란,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군 소계	57				57	
-------	----	--	--	--	----	--

고압전기안전관리	20				20	
동물사육	23				23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전임강사란, 조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41				541	
---------	-----	--	--	--	-----	--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465				465	
조교	75				7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청 정원 증원(55명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서기관 2, 행정5급 10, 행정6급 19, 전산6급 1, 행정·공업·시설·전산 6급 1, 행정7급 16, 행정·공업·시설7급 3, 행정8급 2), 본청 정원 감원(2명 : 부이사관 1, 행정·시설7급 1) 및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감원(74명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5급 15, 행정·공업·시설 5급 2, 행정6급 19, 전산6급 1, 행정·공업·시설6급 4, 행정·공업·시설·전산6급 1, 행정7급 21, 행정·공업·시설 7급 4, 행정8급 1, 사무운영8급 1)은 202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제38대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폐지 감원(3급 △1명)
- 나. 주택공급·균형발전, 1인가구, 창업·4차산업 육성, 청년지원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6명)
-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6명)
- 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9명)
 - ▶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일반직 △8명)
- 마. 서울시립대 학과 신설,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전임교수 +15명, 조교 +6명)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